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32
----------	--------

제출년월일 : 2025.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구 실정에 맞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을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상 근거법령 개정

- (안 제4조, 제8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 (안 제9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안 제14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관한 사항 반영

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 지방자치단체 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조례에 규정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9. 5.~9. 25.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각 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 여부
2. 가로수를 심는 지역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니는지 여부
3.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지 여부
4. 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6. 생태계 보전·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돈된”을 “정돈되어 있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를 “쉽도록 미리 옮겨 심었거나”로, “발달하였을”을 “발달했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樹高)”를 “(樹高: 나무높이)”로 한다.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했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재배수를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8. 교목성(喬木性: 큰키나무류) 가로수를 심는 경우에는 묘목의 직경이 6센티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3.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4. 병해충 감염, 재해·재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제9조제1항 본문 중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육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중 “**가로수**”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법 제13조”로, “**득하여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을 “(**가로수 조성**과 관리의 민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재**”를 “**조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2호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 (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1 중 “**제15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제16조제3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1. 별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규격	수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타					
사유						
작업방법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규격	수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까지(일간)	
승인조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W)			
	납부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신 설>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자동차 배기가스 및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

·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 각 호-----.

1.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 여부
2. 가로수를 심는 지역----- 지니는지 여부
3.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지 여부
4. 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신 설>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
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된 것
2. (생 략)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생 략)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
무가 살아남음)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뿌리돌림
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
달하였을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
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7.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
배수를 이식할 수 있을 것
8. 가로수의 수고(樹高)와 지하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6. 생태계 보전·복원 등의 용
도에 적합한지 여부

② -----
영 제7조제3항-----
----- 각 호
-----.

1. ---- 정돈되어 있을 -----

2. (현행과 같음)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
했을 것
4. (현행과 같음)
5. -----

----- 쉽도록 미리 옮겨 심
었거나-----
----- 발달했을-----
-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
배수를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삭 제>

7. ----- (樹高: 나무높이)

고(枝下高: 수관 이하의 가지가 없는 나무줄기의 길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신 설>

제5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 3. (생략)

제6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8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호와 같다.

-----.

8. 교목성(喬木性: 큰키나무류) 가로수를 심는 경우에는 묘목의 직경이 6센티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산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5조(식재위치)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식재기준)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생 략)

제9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별표1 제4호나목에 따라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해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 · 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3.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4. 병해충 감염, 재해·재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

실시한다.

②·③ (생략)

④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0조(병해충의 방제)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1조(가로수의 보호) 구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가로수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13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14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외의 자가 가로수 -----
법 제13조-----
----- 받아야 ----.

제10조(병해충의 방제) -----

---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가로수의 보호) -----
--- 각 호-----
-----.

1. ~ 7. (현행과 같음)

제13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가로수 조성과 관리의 민간

간위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2.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신 설>

위탁) ----- 조성 -----
----- 각 호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제15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u>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제15조</u>(원인자부담금) ①・② (생략)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u>각호</u>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 3. (생략) ④・⑤ (생략) <u>제16조</u> (생략)	<u>제16조</u>(원인자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각호</u>----- -----.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u>제17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례에 규정하고 근거 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임윤경
연 락 처	02-3153-9563